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436호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 변경

1.도로의종류	고속국도	2.노선명	제1호 경부선
3.통행료수납자	한국도로공사 사장	4.통행료	주요구간 통행료 아래 참조
5.통행료수납구간	경기도 화성시 방교동 (동탄JCT) ~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기흥동탄IC, 4.37km) * 직선화구간 통행료 변경 수납		
6.통행료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한 모든 차량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 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차량		
7.통행료수납방법	요금소 통과 시 현금(통행료 정산기를 운영하는 일반차로에서는 사용 불가, 안내문 수령 후 사후 납부 가능), 선불·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납부		
8.통행료수납기간	2024년 3월 28일(05:00)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참고)

제1호 경부선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구 간 (나들목)	통행료					
	구분	1종	2종	3종	4종	5종
서울~청주	전	6,500	6,600	6,800	8,800	10,200
	후	6,400	6,600	6,800	8,800	10,200
수원신갈~영동	전	9,300	9,400	9,800	12,800	15,000
	후	9,300	9,400	9,800	12,800	14,900
기흥~천안	전	3,400	3,500	3,600	4,500	5,100
	후	3,400	3,500	3,600	4,400	5,100

※ 전 구간 통행료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에서 확인 가능함.